

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30일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
	설치등 구분	[] 신축 [] 증축 [] 개축 [] 재축 [] 이전 [] 대수선 [] 용도변경	
	건축물 명칭	준공일	
	건축주	성명	연락처
		주소	
	대지 현황	대지 지번	대지면적 m ²
	건축물 현황	면적	연면적 m ² , 건축면적 m ²
층수		지상 층, 지하 층	수용인원 명
지하역사 명칭			
지하도상가 명칭			

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	0000. 00. 00. ※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재평가 신청 사유	
-----------	--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신청서 접수 및 심의 요청	→	심의	→	통보
신청인		시·도		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		시·도